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24
----------	------

2025. 9. 8.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8. 28. 광양시장

나. 회부 일자: 2025. 8. 29. 회부

다. 상정 일자: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9. 8.)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2024년 11월에 계약 체결된 수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체험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전반

【참고 1.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 위치: 진월면 망덕리 산25-6번지 ~ 태인동 1630-1번지
- 규모: 짚와이어(4라인 L=898m), 모노레일(12인승 L=264m)

【참고 2. 위탁사항】

- 수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
- 위탁방식: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 수탁자선정: 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
- 위탁범위: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전반
- 예정가격: 31,794,000원(부가세포함)/년

3. 검토 의견

가. 동의안 제출 취지

- 이 동의안은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제출한 것임.

나. 주요 내용

1) 위탁 근거

- 민간위탁(행정기관의 사무)과 관리위탁(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이 혼재할 경우 관리위탁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17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 공유재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1조의2

2) 위탁 추진 적정성 여부

-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 가능성: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 체험시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 및 제반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이용객 불편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임.
-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력충정원제 및 총액 인건비제도 하에서 시설 운영 목적으로 신규 인력 충원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비해 시설 전문 제작 및 설치 업체인 전문 기업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 지식과 기술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체험시설 운영 및 체험료 부과·징수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의 운영실적 보고를 통해 성과 측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운영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주기적(분기, 연)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위탁사무의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 및 제반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위탁 기간의 적절성 여부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서 위탁 기간은 위탁 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서에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위탁 방법의 투명성·객관성

- 위탁 방식: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 선정 방법: 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
-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의견

- 이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또한,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탁 과정에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출석위원 6명)

- 안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재위탁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수량(면적)	세부내용	비 고
모노레일	1대	12인승(L=264m)	소요시간 4분50초
짚와이어	5라인	탑승(4), 화물(1), (L=898m)	소요시간 1분20초
컨테이너하우스	1대	매표소 및 대기소(3*7.8m)	
데크로드	L=300m	구인용 L=230m, 탑승로 L=70m	
출 발 대	3층	2층 타는곳, 3층 전망대	공작물
도 착 대	2층	2층 내리는곳	공작물
안전장구	100set	트롤리, 하네스, 헬멧, 캐러비너 등	
관제시스템	1식	CCTV, 모니터, 신호램프 등	

2. 위탁사항

- 위 탁 명 : 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 위탁방식 :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 수탁자선정 : 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
- 예정가격 : 31,794,000원(부가세포함)/년

○ 위탁범위(내용)

-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 체험시설 운영 및 이용료 부과·징수
- 체험시설의 기계, 전기, 소방, 위생, 청소 등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이용객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광양시가 인정하는 사항